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염려하는 페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낫동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 보내실 주소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

##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 문 전 처가 아이들 못 만나게 방해하는데

〈문〉 2년전에 이혼을 하였고 전 처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양육권을 받아 키우고 있으며 저는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제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스케줄이 적혀있는데도 아이들 엄마가 번번이 제가 아이들 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훠방을 놓는데 제가 계속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은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와 헤어져서 살아야하는 부모에게 자녀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자주 보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판결문에 자녀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엄마의 자녀 방문에 대한 계획적인 훠방은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며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 엄마로부터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고 귀하께서 자녀 양육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들을 엄마 입의대로 귀하에게 보여주지 않는 행위는 법원의 판결문에 불복하는 행위로서 귀하께서는 Contempt Action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하면 형사처벌 또는 벌과 금처벌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귀하께서 전 처에게 배우자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생활비 보조를 중단시키거나, 혹은 그 액수의 김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처가 앞으로 법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본드(Bond)를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전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법원의 명령없이 이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비록 아이들 엄마의 자녀 방문 훠방 행위는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자탄의 대상이나, 귀하께서 자녀 양육권을 다시 취득하여 아이들과 살지 않는 한,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불하셔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문 남편과 사는 곳이 다른데 어느 법원에 이혼신청 해야되나

〈문〉 저는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으로 학업도중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San Francisco에 집을 마련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성격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의 연속이었고 저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 급기야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San Francisco에 남았고 저는 LA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서로가 이혼을 원하는데 제가 LA에 있는 법원을 이용하여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이혼 신청 시에 법원의 선택은 본인과 배우자의 거주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귀하의 경우, 남

편이 있는 San Francisco와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LA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단 귀하께서 LA 카운티의 가정법원을 통하여 이혼 수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귀하가 LA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일시로 방문중인 것이 아니라 귀하의 현 거주지가 LA이어야 하며,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바로 직전에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LA 카운티에 3개월 이상을 연속적으로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 문 유서 작성할 때, 한 자식에게만 재산 물려줄 수 있는지

〈문〉 저는 두 아들을 두고 있고 아내는 2년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큰아들에게는 이미 마련해 준 것이 많아 현재 남아 있는 전 재산은 둘째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유서 작성이 가능한지요?

〈답〉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귀하께서 큰아들에게 재산을 이미 분배하셨을 때, 그러한 분배가 훗날, 큰아들이 받을 상속의 뜻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또한, 혹은 앞으로 유서를 작성할 때, 유서에 큰아들의 이름을 반드시 귀하의 가족 관계를 명시하는 항목에 기입하시고 이 유서 상에 귀하께서 큰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지 않으심이 귀하의 의도이며 큰아들에게 대한 상속 내용이 삭제된 것이 유서 작성에 있어서 실수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밝혀 장차 유서의 내용 해석에 있어 오해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